

국 토 교 통 부

통 보

제 목 토취장 변경협의 미이행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10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5. 6. 24. 부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로 9에 있는 (주)○○기업(대표자 ○○○)과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(이하 ‘진입도로공사’라 한다)’를 총 공사부기금액 4,480,350,00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6. 26. 착공하여 2017. 12. 26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, 설계내역에 순성토 운반(L=7.5km, 358,511m³)이 반영되어 있다.

한편 부산○○공사에서는 위 공사 인근에서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(이하 ‘단지조성공사’라 한다)’¹⁶⁰⁾를 2015. 10. 1. 착공하여 2018. 9. 29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, 설계내역에 잔토처리(발파암) 119,144m³이 반영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, 2017. 1.23.)」 제 13장제6절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

160) 2015. 6. 8. 부산광역시 ○○구 ○○대로 0000번길 00-00에 있는 (주)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과 총 공사부기금액 33,248,435,332원에 도급 계약하였음

공사의 발생, 특정 공종의 삭제, 공정계획의 변경, 시공방법의 변경,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○○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종합보고서」(2014.12.) 0.0 토취장 조사¹⁶¹⁾에 따르면 공사시행 시 인근 사토발생현장 조사 및 협의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‘진입도로공사’ 시행 시 도로 성토에 필요한 순성토 물량을 ‘단지조성공사’에서 사토되는 물량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계변경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‘진입도로공사’ 토취장 장소를 당초 임의 지점인 7.5km에서 인근 1.0km에 있는 ‘단지조성공사’로 변경하는 협의¹⁶²⁾를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300,799,000원 상당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통보] 위 공사에 도로 성토에 필요한 순성토 물량 72,200m³를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’에서 유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공사비 300,799,000원 상당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
161) 인근 공사구간 토공발생 현황에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’(발생토량 297,000m³)가 있음

162) 2017. 3. 22. 감사당시 부산광역시 ○○본부와 부산○○공사에서는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’에서 발생하는 발과암 72,000m³를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’에 유용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